의안번호	제456호
의결연월일	2018. 1. 8

-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2. 29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8. 1. 2

다. 상 정 일 자 : 2018. 1. 8

제237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교육체육과장 : 최명락)

가. 제안이유

○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,

○ 부대시설사용료에 냉·난방시설 항목을 추가하고,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어 감면조항 일부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비율 명기(제11조 관련)

-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10%를 추가로 징수한다.

○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

[별표1] 부대시설 사용료(제10조 관련)

(단위: 원)

시 설 별	기 준	사 용 료	비 고
냉·난방시설	4시간	200,000	1시간 초과당 25%가산

○ 감면기준 추가

[별표2]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(제13조 관련)

구 분		감면비율	감면적응대상
6.국가, 충청남도 또는 군 에서 후원·보조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	해당체육시설	50%	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임호빈)

○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람 수입

에 대한 사용료 징수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, 관람수입 총액의 10%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것이며,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 중 [별표 1]의 냉·난방시설 사용시 4시간 기준 2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1시간 초과당 25%를 가산하는 내용과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문예회관 운영 사용료 조례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감면 조항 일부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[별표 2]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6호에 "국가,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·보조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" 시 50%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❍ 생　　략

5. 토 론 요 지

❍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❍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❍ 없　　음